

#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의 안 번 호	284
------------	-----

2022. 12. 19.  
주택공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 1. 제안경위

- 2022. 10. 17. 경기문 의원 발의 (2022. 10. 21. 회부)

## 2.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는 공동주택 관리의 선진화와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를 마련하여 서울특별시시장의 주거공동체 문화 조성을 위한 노력을 규정하고 있음.
- 공동주택의 관리비 횡령 등의 문제는 사전에 방지해야 갈등의 소지가 적고, 따라서 공동주택 관리의 당사자들 스스로 관리 역량을 향상시킬 방법으로써 시장이 이들을 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시장이 입주자등 및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등에게 관리비 횡령 등 사회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한다는 규정을 신설 (안 제3조 제5항)
- 나. 시장이 이에 따른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책무 이행 정도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회계감사 결과 및 공동주택 회계처리 기준의 준수 여부에

따라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 (안 제11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 신설)

현행	개정안
<p>제3조(책무) ① ~ ④ (생략)</p> <p>&lt;신설&gt;</p> <p>제11조(공동주택관리업무 필요비용 지원) ① (생략)</p> <p>② 시장은 제1항에 <u>따른 비용을 지원할 경우, 제3조제4항의 책무이행 정도를 평가하여 지원비용 산정에 반영할 수 있다.</u></p> <p>&lt;신설&gt;</p> <p>&lt;신설&gt;</p>	<p>제3조(책무) ① ~ ④ (현행과 같음)</p> <p>⑤ <u>시장은 입주자등 및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등에게 관리비 횡령 등 사회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u></p> <p>제11조(공동주택관리업무 필요비용 지원) ① (현행과 같음)</p> <p>② ----- <u>따라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u> -----.</p> <p>1. <u>제3조제4항의 책무 이행 정도</u></p> <p>2. <u>법 제26조에 따른 회계감사 결과 및 「공동주택 회계처리 기준」의 준수 여부</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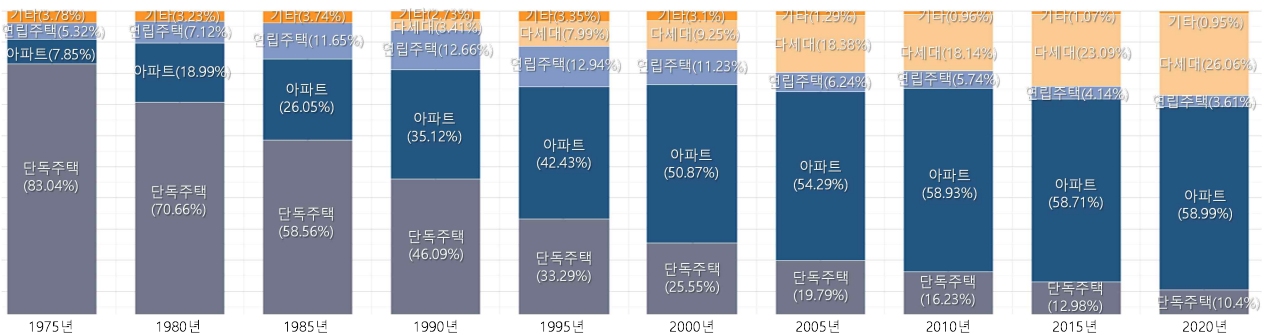
#### 4.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오정균)

##### 1) 개정조례안의 배경 및 취지

- 이 개정안은 주택시장에서 공동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

하는 상황에서 공동주택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시장이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에게 관리비 횡령 등 회계처리문제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공동주택관리업무 지원비용 산정 시 회계감사 결과 등을 반영할 수 있게 하려는 것으로, 경기문 의원이 발의하여 2022년 10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음.

- 서울시 주택공급 유형을 살펴보면, 1975년 서울시에서는 단독주택이 전체 주택재고량의 83%를 차지하는 대표적 주택유형이었으나, 이후 인구 집중에 따른 주택부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아파트 등 공동주택<sup>1)</sup>을 중심으로 주택공급이 이루어진 결과 2020년 기준 아파트 전체 주택재고량의 59%를 차지하기에 이르렀음.<sup>2)</sup>



〈서울시 주택유형 비율 변화〉

- 공동주택 물량의 증가와 함께 입주자들이 납부하는 공동주택 관리비도 증가하고 있는데,<sup>3)</sup> '21년 기준 전국 공동주택 관리비는 총 22조9천억원으로 세대당 약 216만원의 관리비를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sup>4)</sup>.

1) 「주택법 시행령」 제3조(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 ①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이하 “아파트”라 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나목에 따른 연립주택(이하 “연립주택”이라 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다목에 따른 다세대주택(이하 “다세대주택”이라 한다)

2) 서울연구원, <https://data.si.re.kr/node/65166>

3) 공동주택 관리비(합계 평균)의 최근 5년간 변화(출처: K-apt공동주택관리 정보시스템)

- 이에 대하여 정부는 '16년 공동주택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공동주택의 관리 방법,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규약, 관리비 및 회계운영, 시설관리 및 행위허가, 공동주택관리 분쟁 조정 등을 규정한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을 제정(시행 2016.8.12.)하였으며, 서울시도 2015년에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이하 '조례')를 제정하였음.
- 서울시는 조례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맑은 아파트 만들기 사업'(이하 '맑은 아파트 사업')<sup>5)</sup>으로 공동주택관리 관련 시범사업과 공동주택단지내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모사업 등을 추진하면서,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음.
- 그럼에도 공동주택 관리에 있어 입주민, 관리주체 등의 입찰답합, 관리비 횡령 등 회계비리 문제는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으며, 일부 관리주체는 세부 내역이 불투명한 '깜깜이 관리비'를 부과·징수 하는 등 공정한 공동주택 관리를 저해하고 있는 실정임.

## 2) 입주자등에 대한 시장의 교육 책무 신설 관련(안 제3조제5항)

- 이 개정안은 시장이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등에게 관리비 횡령 등 사회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는 의무를 추가하였음.

<최근 5년간 관리비 변화> (단위: 원/m<sup>2</sup>, 주거전용면적 기준)

연도	서울시	전국
2017년	2,419	2,115
2018년	2,540	2,203
2019년	2,580	2,248
2020년	2,683	2,349
2021년	2,753	2,410

4) '관리비 사각지대 해소 및 투명화를 위한 개선방안', 관계부처 합동, 2022.10.24.

5) 서울시가 2013년부터 아파트 관리의 투명성을 강화하여 입주민의 알권리를 보호하고, 입주민과 노동자가 상생하는 주거공동체를 조성하여 맑은 아파트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시행 중인 사업임.

- 서울시는 맑은 아파트 사업을 통해 회계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아파트입주민의 알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아파트 관리비, 개별사용료, 잡수입 등 73개 항목의 상세내역과 공사 및 용역의 입찰·계약 정보, 입주자대표회의 등 의결사항 등을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http://openapt.seoul.go.kr>)’에 공개하고 있음.
- 그 밖에 법, 조례, 관리규약 등 ‘법률 관련 분야’와 공동주택 회계처리 기준, 예산수립 및 결산업무, 관리비·사용료·장기수선충담금 부과 및 집행 등 ‘예산·회계 관련 분야’ 등의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아파트 관리 주치의 자문단’도 운영하고 있음.
- 이외에도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는 법에 따라 매년 4시간 이상의 윤리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토록 하고 있으며<sup>6)</sup>,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따라 동별 대표자<sup>7)</sup>는 구청장이 실시하는 운영·윤리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기간<sup>8)</sup> 내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직무를 정지하거나, 해임 등의 불이익<sup>9)</sup>을 부과하고 있음.

---

6) 「공동주택관리법」 제17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등 교육)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에게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교육 및 윤리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은 그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관계 법령 및 관리규약의 준칙에 관한 사항
2.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의 직무·소양 및 윤리에 관한 사항
3. 공동주택단지 공동체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담금에 관한 사항
- 4의2. 공동주택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
5. 입주민 간 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
6. 하자 보수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7)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로서, 입주자대표회의는 동별 대표자로 구성됨(「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1항).

8) 동별 대표자로 선출된 경우 임기 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재교육은 교육 이수일로부터 9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6개월 이내

9)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2022.08) 제46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무와 책임) ③ 동별 대표자는 법 제17조 및 영 제18조에 따라 구청장이 실시하는 운영·윤리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기간 내에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동별 대표자의 직무(임원의 직무를 포함한다)는 교육을

- 이처럼 서울시는 자치구와 함께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 하면서 공동주택 관리에 따른 비리 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배임·횡령 등 공동주택 관리 관련 회계비리의 근절을 위해서는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인 바,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

### 3) 공동주택관리업무 필요비용 지원 관련(안 제11조제2항 관련)

- 현행 조례 제11조에 따라 시장은 공동주택관리 관련 시범사업과 단지 내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모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고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비용도 지원할 수 있는데, 이 때 맑은 아파트<sup>10)</sup> 문화 조성을 위해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등의 단지 내 노동자 처우개선 및 인권존중 책무이행<sup>11)</sup> 정도를 평가한 결과를 지원비용 산정 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서울시는 지난해 맑은 아파트 만들기 사업의 일환인 ‘살기좋은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통해 선정된 243개 단지에 대해 2억7천5백만원의 공동주택 관리업무 필요비용을 지원하였고, '22년 10월 현재 229개 단지에 대해 약 2억 6백만원을 지원<sup>12)</sup> 하였음(붙임2. 공동주택 관

이수하기 전까지 정지된다. 다만, 시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한 경우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한다.

**제31조(동별 대표자 등의 결격사유 및 해임절차 등)** ② 영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 및 임원의 해임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동별 대표자의 임기(전 임기와 현 임기를 포함한다) 중에 한 행위에 한정하며, 객관적 증거자료(관할구청의 행정처분, 사법기관의 판결, 당사자의 사실인정 등)를 제시하여야 한다.

8. 제46조제3항부터 제5항에 따른 기간 내에 4시간의 운영·윤리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때
- 10)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9.29, 2019.3.28>
  1. "맑은 아파트"란 관리비의 거품을 빼고 입주자등의 갈등을 최소화하며 입주자등의 참여와 소통을 통해 주거공동체 문화가 조성되고, 단지 내 노동자 등 이해관계자의 인권과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 11) **조례 제3조(책무)** ④ 입주자등 및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등은 경비원 등 단지 내 노동자에게 적절한 보수를 지급하고, 노동자의 처우 개선과 인권 존중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6.9.29, 2019.3.28>
- 12) 이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은 시·구비 매칭사업으로 자치구의 재정력에 따라 시비를 20~40% 범위에서 차등적으로 지원하였고(붙임2. 참고), 자치구는 확보된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공모된 각 아파트 단지의 사업실행계획서 등을 심사하여 최종적인 금액을 산정하여 교부하고 있는데, '22년 기준 2억4천7백만원 예산이

리업무 필요비용 지원 사업(살기좋은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sup>13)</sup>

- 공동주택관리업무 필요비용 지원사업은 투명한 아파트 관리 문화 정착 및 인권 존중을 바탕으로 한 노동환경 개선 등 긍정적 성과<sup>14)</sup>도 거두었지만, 여전히 입주자대표회의의 부적정한 운영경비 사용, 경리직원의 관리비 횡령, 장기수선충당금 부정사용 등 회계관련 비리<sup>15)</sup>는 계속 발생하고 있어, 공동주택 관리업무 지원비용 산정시 회계 감사 결과를 반영토록 하는 것은 회계 비리 예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법 제26조(회계감사)에 따라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 등(의무관리 대상) 일정 요건에 부합하는 공동주택은 매년 1회 이상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고,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이하 ‘회계기준’)을 적용토록 함으로써 공동주택 회계 업무를 공정하고 명확하게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 이와 연계하여, 개정안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업무 필요비용 지원비용 산정시 입주자등 및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등의 책무이행 정도를 평가한 결과 외에도 법 제26조에 따른 회계감사의 결과와 회계기준의 준수 여부를 반영한다면 공동주택 운영 비리를 예방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종합하면, 이 개정조례안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서울시 전체 재고주택의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동주택 회계부정이 지속됨으로 인해 입주민간 갈등이 증폭됨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의 선진화와 투명성

수립됨

13) '23년 예산 전액 삭감되었음.

14) 서울시(2021), 2013년 ~ 2021년 맑은 아파트 만들기 추진현황 보고

15)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2017.4), 아파트 관리비리 적발사례

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개정의 적정성과 시의성이 인정됨.

의안심사지원팀장 김성연	02-2180-8204
입 법 조 사 관 조윤길	02-2180-8208

[붙임1] 관련 규정 (p.9)

[붙임2] 맑은 아파트 추진현황(2013년~2021년) (p.11)

[붙임3] 공동주택 관리업무 필요비용 지원 사업(살기좋은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p.13)



■ **공동주택관리법 제17조**

제17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등 교육)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에게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교육 및 윤리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은 그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관계 법령 및 관리규약의 준칙에 관한 사항
2.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의 직무·소양 및 윤리에 관한 사항
3. 공동주택단지 공동체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에 관한 사항
- 4의2. 공동주택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
5. 입주민 간 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
6. 하자 보수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입주자등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교육을 입주자등에게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8. 3. 13.>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방법, 비용 부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3. 13.>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8조**

제18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등 교육) ① 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또는 입주자등에 대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교육 및 윤리교육(이하 이 조에서 “운영·윤리교육”이라 한다)을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육 10일 전까지 공고하거나 교육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8. 9. 11.>

1. 교육일시, 교육기간 및 교육장소
2. 교육내용
3. 교육대상자

#### 4. 그 밖에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②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은 매년 4시간의 운영·윤리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 ③ 운영·윤리교육은 집합교육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교육 참여현황의 관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온라인교육으로 할 수 있다.
-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운영·윤리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수료증을 내주어야 한다. 다만, 교육수료사실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소속된 입주자대표회의에 문서로 통보함으로써 수료증의 수여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8. 9. 11.>
- ⑤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에 대한 운영·윤리교육의 수강비용은 제23조제3항제8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에서 부담하며, 입주자등에 대한 운영·윤리교육의 수강비용은 수강생 본인이 부담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 9. 11.>
- ⑥ 시장·군수·구청장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운영·윤리교육 참여현황을 엄격히 관리하여야 하며, 운영·윤리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에 대해서는 법 제93조제1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9. 11.>

### ■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46조

- 제46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무와 책임) ①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으로써 영 제14조 및 규칙 제4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②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입주자등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③ 동별 대표자는 법 제17조 및 영 제18조에 따라 구청장이 실시하는 운영·윤리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기간 내에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동별 대표자의 직무(임원의 직무를 포함한다)는 교육을 이수하기 전까지 정지된다. 다만, 시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한 경우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한다.
  - ④ 동별 대표자로 선출된 경우 임기 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3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동별 대표자로 당선된 날부터 임기 시작일 사이에 제3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임기 시작일에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 ⑤ 동별 대표자는 전항에 따른 교육 이수일로부터 9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6개월 이내에 재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 붙임2 2013년~2021년 맑은 아파트 만들기 추진개요

### □ 공동주택 관리현황

(‘20년 12월말 기준)

구 분	총계			의무관리대상*			임의관리대상		
	단지수	동수	세대수	단지수	동수	세대수	단지수	동수	세대수
계	4,217	20,193	1,530,890	2,258	16,426	1,371,752	1,959	3,767	159,138
아파트	3,505	18,177	1,435,220	2,079	15,981	1,314,307	1,426	2,196	120,913
주상복합	349	559	70,394	171	341	55,015	178	218	15,379
연립	341	1,361	23,922	8	104	2,430	333	1,257	21,492
다세대	22	96	1,354	-	-	-	22	96	1,354

※의무관리 :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에 의거 ▲300세대 이상 ▲150세대 이상 승강기 +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공동주택 등

### □ 추진 경과

#### ○ 맑은 아파트 만들기 추진계획 (‘13.05.30, 시장방침)

- 관리실태 시·구 합동조사와 함께 제도개선, 주민참여 공동체 회복운동 전개
  - ▶ 아파트 관리 실태조사(131개 단지 총 694건 조치)
  - ▶ 주민참여 활성화 : 층간소음 자율해결, 아파트관리 주민학교, 통합정보마당 개설 등

#### ○ 맑은 아파트 만들기(II) (‘14.10.30, 주택정책실장 기자설명회)

- 비리 적발 위주 ⇨ 주민 참여 확대 및 역량 강화, 예방시스템 마련에 집중
  - ▶ 층간소음 전문 컨설팅(1,097건), 공사·용역 전문가 자문(1,322건)
  - ▶ ‘온라인 투표시스템’ 23개 단지 시범 운영(기존 대비 투표율 3배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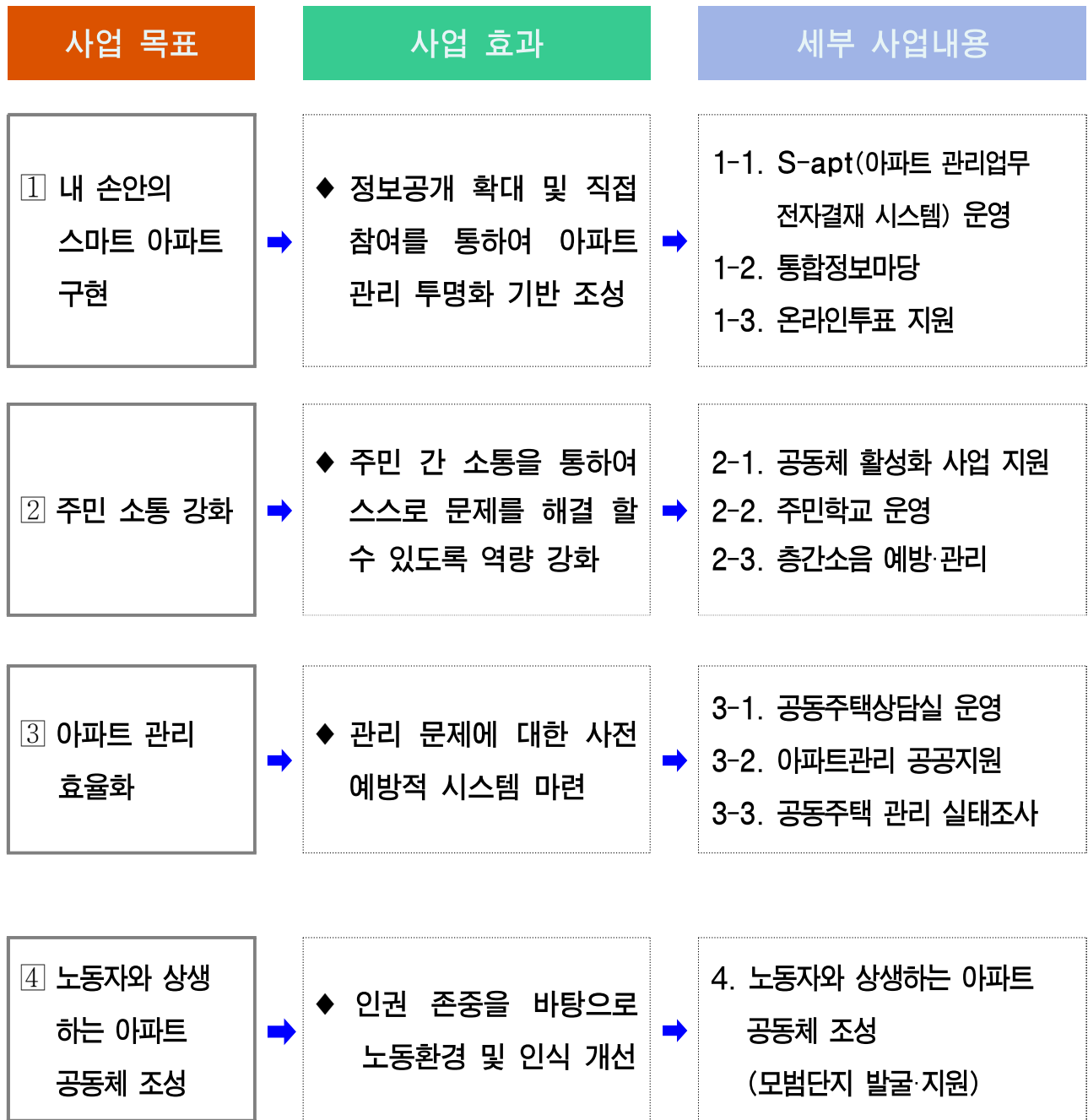
#### ○ 맑은 아파트 만들기(III) (‘16.08.25, 시장방침)

- 비리 사전예방과 자치 역량을 강화하고 소통하는 행복한 주거공동체 추진
  - ▶ 품질관리등급제 도입(96단지), 온라인투표 확대(900단지), 관리실태 조사(402단지)

#### ○ 맑은 아파트 만들기(III) 확산계획 (‘18.06.21, 국장방침)

- 주거공동체 상생 및 주민참여 확산, 전자결재시스템 시범운영, 관리품질등급제(231단지)

## □ 2021 맑은 아파트 만들기 사업 주요내용



## □ 사업 예산

(단위:백만원)

계	스마트아파트 구현	주민소통 강화	아파트관리 효율화	노동자와 상생
1,662	897	583	182	-

### 붙임3

## 공동주택 관리업무 필요비용 지원 사업(살기좋은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 □ 추진 근거

- 「공동주택관리법」 제21조(공동체 생활의 활성화), 제85조 1항(관리비용의 지원)
- 「市 공동주택관리조례」 제6조(공동체활성화), 제11조(공동주택관리업무 필요비용 지원)

### □ 사업 개요

- 사업내용 : 공동체활성화 공모사업, 주민리더교육컨설팅, 성과 공유 등  
- '21년 243개 단지 지원, '22년 10월 현재 22개 자치구 229단지 진행중

- 지원대상 : 150세대 이상 아파트 의무관리단지 등

- 지원분야 : 7개 분야

- ① 소통/주민화합 ② 친환경 실천/체험 ③ 취미/창업 ④ 교육/보육  
⑤ 건강/운동 ⑥ 이웃돕기/사회봉사 ⑦ 관리노동자 배려·상생

- 지원내용 : 공모사업 단지별 8백만원 이내

- 자부담률 차등적용 : 사업 참여연수에 따라 (신규)10% → (3년초과) 40%이상

- 공모신청 : 아파트 의무관리단지 3자 공동명의\* 신청

- \* 입주자 대표회의, 공동체활성화단체, 관리주체

- 사업예산 : 247백만원 \*시·구비 매칭사업, 區의 재정력에 따라 시비 20~40% 차등지원

### □ 추진 실적 및 계획

- 커뮤니티플래너 역량교육 실시 및 시비보조금 교부 : '22. 4.~7월

- (역량교육) 5일간 34명 수료, (보조금) 22개 자치구, 239단지에 190백만원 교부

- 사업 모니터링 및 중간 정산 : '22. 9월

- 공동체활성화 우수사례 선정 및 발표회 개최 : '22. 12월

□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지원 현황**

○ '17년 ~ '22년 공모사업 시비 예산집행 현황 (' 22. 10월 기준)

(단위:백만원)

구 분	'22	'21	'20	'19	'18	'17
사업예산	207	289	481	482	434	376
지원금액	206 (집행 : 99%)	275 (집행 : 93%)	447 (집행 : 93%)	444 (집행 : 92%)	394 (집행 : 91%)	374 (집행 : 99%)
참여단지	229단지	243단지	275단지	273단지	257단지	269단지

○ '22년도 자치구별 예산안

연번	자치구	예산수요 (단지수)	시 비 보조율	사업예산 (단위:천원)		
				계	시비	구비
1	중 로 구	4	30	9,467	2,840	6,627
2	중 구	10	30	23,667	7,100	16,567
3	용 산 구	10	30	23,667	7,100	16,567
4	성 동 구	30	30	53,250	21,300	31,950
5	광 진 구	4	40	7,075	2,830	4,245
6	동 대 문 구	10	40	17,750	7,100	10,650
7	중 량 구	8	40	14,200	5,680	8,520
8	성 북 구	30	40	53,250	21,300	31,950
9	강 북 구	5	40	8,875	3,550	5,325
10	도 봉 구	9	40	15,975	6,390	9,585
11	노 원 구	18	40	23,004	10,224	12,780
12	은 평 구	5	40	8,875	3,550	5,325
13	서 대 문 구	10	40	17,750	7,100	10,650
14	마 포 구	6	30	14,200	4,260	9,940
15	양 천 구	10	40	17,750	7,100	10,650
16	강 서 구	14	40	24,850	9,940	14,910
17	구 로 구	18	40	31,950	12,780	19,170
18	금 천 구	7	40	12,425	4,970	7,455
19	영 등 포 구	4	30	9,433	2,830	6,603
20	동 작 구	18	40	31,950	12,780	19,170
21	관 약 구	6	40	10,650	4,260	6,390
22	서 초 구	16	30	37,867	11,360	26,507
23	강 남 구	10	20	35,500	7,100	28,400
24	송 파 구	15	30	35,500	10,650	24,850
25	강 동 구	15	40	26,625	10,650	15,975
	기 타			2,556	2,556	
계		292		568,061	207,300	360,761